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24모3867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 항 고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재훈 외 2인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24. 9. 27. 자 2024보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

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24. 8. 23. 준hang고인 1의 주거지와 준hang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 준hang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의자인 준hang고인들에게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을 교부하였을 뿐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인 준hang고인 1의 휴대전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자체를 압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hang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준hang고인들이 이 사건 준hang고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한 다음,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사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hang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0. 1.

재판장 대법관 이 숙 연

대법관 오 석 준

주심 대법관 엄 상 필